# 집합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아라 사모 공모주 일반 투자신탁 제 1 호
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:
- 법 개정에 따른 '전문투자형'을 일괄 '일반'으로 변경
- 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항, 신설조항, 삭제조항 반영
- 사명 변경에 따른 '아리'를 일괄 '아라'로 변경
- 운용역 정보 변경
- 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대표이사 변경

3. 약관변경 시행일: 2022 년 01 월 19 일

4. 약관변경내용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
| **투자신탁의 명칭**<br>아리 사모 공모주 전문투자형 투자신탁 제1호 | **투자신탁의 명칭**<br>아라 사모 공모주 일반 투자신탁 제1호 |
|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<br>7. "사모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|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<br>7. "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|
| 8. "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"이라 함은 법 9조 제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법 제249조의2 및 법시행령 제271조에 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| 8. "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함은 법 9조 제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 로 법 제24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271조에 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|
| **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**<br>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아리 사모 공모주 전문투자형 투자신탁 제 1호"로 한다. | **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**<br>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아라 사모 공모주 일반 투자신탁 제 1호"로 한다. |

| | |
|---|---|
|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br>4. 사모형<br>5. 전문투자형<br>③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, 투자설명서·자산운용보고서·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등 교부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·환매연기·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, 기준가격의 일별공시,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 |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br>4. 사모집합투자기구<br>5.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<br>③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등 교부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·환매연기·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,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 |
| **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**<br>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 | **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**<br>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 |
| **제3조의3(투자권유 등)**<br>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"적격투자자"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br>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| **제3조의3(투자권유 등)**<br>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"적격투자자"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br>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|

| | |
|---|---|
|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 |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 또한 동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 |
| **제4조의2(전담중개업자)**<br>10.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(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)를 하는 업무 | **제4조의2(전담중개업자)**<br>10.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(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)를 하는 업무 |
| **제8조(신탁금의 납입)**<br>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8제3항 및 법시행령 제271조의11제1항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 | **제8조(신탁금의 납입)**<br>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8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 |
| .<br>**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**<br>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| **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**<br>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양도의 결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투자자수가 100인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. |
| **제16조(투자목적)** | **제16조(투자목적)** |

| | |
|---|---|
|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유동자금을 단기자금형태로 운용하고, 추가적인 수익을 위하여 법 제4조 1항의 증권(IPO 관련증권포함)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유동자금을 단기자금형태로 운용하고, 추가적인 수익을 위하여 법 제4조 1항의 증권(IPO 관련증권포함)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**제18조 (운용 및 투자제한)** | **제18조 (운용 및 투자제한)** |
|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< 생 략 ><br>**< 신 설 >** |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 생 략 ><br>5. 다음 가•나•라•마 목을 합산한 금액 또는 다 목의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br>가.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<br>나.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<br>다.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<br>라.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. |

| | |
|---|---|
| | 이하 같다.)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<br>마.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 |
| 5.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<br>6.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| 6.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<br>7.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|
| **제20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**<br>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49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 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 **제20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**<br>< 삭 제 > |
| **제20조의2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**<br>< 신 설 > | **제20조의2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**<br>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,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.<br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 |

| | |
|---|---|
| | 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.<br>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br>1.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<br>2. 법 제88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다 여부<br>3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br>4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<br>5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<br>6.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<br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<br>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|
| **제21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)**<br>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br><br>**< 신 설 >** | **제21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)**<br>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br><br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합 |

| | |
|---|---|
| | 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하여야 한다. |
|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| ④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|
| **제25조(환매연기)** | **제25조(환매연기)** |
| ②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| < 삭 제 > |
| ③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정한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br>1.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<br>가. 환매에 관한사항<br>나.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<br>2. 환매연기를 계속하는경우<br>가.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<br>나.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<br>다.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<br>라.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| ②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237조를 적용하며,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여 한다.<br>1.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<br>2.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|
|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|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당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<br>⑤ 판매회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<br>< 삭 제 > |

| | |
|---|---|
|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(이하“정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.<br>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.<br>⑦환매연기 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.<br>⑧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br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(이하“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에 해당하는 환매청구기준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br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| |
| **제27조(기준가격의 산정 및 제시)**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산정일 전날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| **제27조(기준가격의 산정 및 제시)**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 계산일의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(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)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을 그 기준가격 계산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|

| | |
|---|---|
|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|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 |
| **제29조(결산 서류의 작성 등)**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br>1. 대차대조표<br>2. 손익계산서<br>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 | **제29조(결산 서류의 작성 등)**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br>1. 재무상태표<br>2. 손익계산서<br>3. 자산운용보고서<br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br>1. 회계기간의 말일<br>2. 투자신탁의 해지일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br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, 전산, 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br>2.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|
| **제32조(상환금 등의 지급)**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| **제32조(상환금 등의 지급)**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|

| | |
|---|---|
|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|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 |
| **제7장 집합투자자총회** | **제7장 집합투자자총회** |
| **제34조**<br>**< 신 설 >**<br><br>**34조 신설로 인해 기존 제 7장은 제 8장으로,**<br>**이하 각 조항들의 조항번호도 하나씩 증가하였음.** | **제34조(집합투자자총회)**<br>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환매 연기의 경우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,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 |
| **제35조의2 (성과보수)**<br>⑥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투자운용인력<br>가. 성명 : 성준모<br>나. 직위 : 과장<br>다. 주요경력 : 해당사항없음<br>2. 운용성과<br>가. 펀드명 : 해당사항없음<br>나. 기간 : 해당사항없음<br>다. 수익률 : 해당사항없음 | **제35조의2 (성과보수)**<br>⑥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투자운용인력<br>가. 성명 : 성준모<br>나. 직위 : 차장<br>다. 주요경력 : 해당사항없음<br>2. 운용성과<br>가. 펀드명 : 해당사항없음<br>나. 기간 : 해당사항없음<br>다. 수익률 : 해당사항없음 |
| **제40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**<br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 **제40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**<br>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 |

| | |
|---|---|
| < 신 설 > |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핵심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br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br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전체 수익자동의를 얻은 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에서 제35조와는 별도로 다음 호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br>1. 변경된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일에 해당일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기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⑤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본 조 제4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|
| **제46조(손해배상책임)**<br>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법령이나 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| **제46조(손해배상책임)**<br>①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법령·신탁계약·핵심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|
| **집합투자업자**<br>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23중앙빌딩<br>주식회사 아라자산운용<br>대표이사 정 충 훈 (인) | **집합투자업자**<br>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-9, 10층<br>아라자산운용 주식회사<br>대표이사 마 주 옥 (인) |